

2025 조총환·양건 테마 형사소송법 판례·기출증보판 정오표(초판)

[제1권]

p.117 THEMA25 친고죄/2. 상대적 친고죄/셋째줄

친고죄가 됨(함께 살고 있는 경우 ⇨ 형면제)

⇨ '(함께 살고 있는 경우 ⇨ 형면제)' 삭제

p.117 THEMA25 친고죄/2. 상대적 친고죄/8째줄 아래에 ▶추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현재 적용이 중지 되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과 동시에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헌재결 2024.6.27., 2020헌마468).

p.181 02. 해설 ① 8째줄

4. 법무부장관, ~ ⇨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

p.267 10. 해설 ①을 아래 내용으로 교체

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4.5.23., 2021도6357 전원합의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정답 ① ⇨ 출제당시 정답 ①

[제2권]

p.271 01. 해설 ㉠을 아래 내용으로 교체

㉠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4.5.23., 2021도 6357 전원합의체).

정답 ④ ⇨ ㉠④

[제3권]

p.71 03.

㉠ 재소자에 대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 ㉠ 재소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p.135 01 해설 ㉢을 아래 내용으로 교체

㉢ 증인들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는데,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한편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사안에서, 원심의 증인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2.23., 2011도15608).

p.147 06 ㉡을 아래 내용으로 교체

㉡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의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p.147. 06 해설 ㉡을 아래 내용으로 교체

㉡ ×: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증거로 할 수 있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 2 제1항 제1호).

[제4권]

p.28. 06. ㉔ 2번째줄

~피고인과 공소의 같이~ ⇨ ~피고인과 공소외 같이~

p.67 최신판례 6째줄

대판 2023.6.29., 2023도3351 ⇨ 대판 2023.6.29., 2022도13430

p.102. 01해설 ㉔ 수정

㉔ 피고인의 동의를 상소를 ⇨ 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p.116. 04. ㉓ 3번째줄

확정판결전이 유죄판결 ⇨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p.216 7.정식재판청구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적용 ○ ⇨ 형종상향금지원칙적용

p.216. 7.정식재판청구 ▶ 아래에 ※추가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형종상향금지원칙으로 개정되었으므로(제457조의2), 이를 준용하는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도 동일하게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된다(즉결심판절차법 제19조, 제457조의2). 따라서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인정한 대법원의 입장(대판 1999.1.15, 98도2550)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p.228 10.

㉔ 공판기일에 알려야 하고, ⇨ ㉔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고,